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5. 3. 8.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2월 18일 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5년 3월 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2005년 3월 7일

제11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정진)

가.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침(2004.12.18)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한시기구 여유기구화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 및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탄력있는 조직운동을 위하여 조직의 통폐합과 명칭을 조정하여 구민의 정서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분청 명칭변경 : 재무국 → 기획재정국
- 부서신설 및 통폐합, 소관부서 조정
 - 신 설 : 재난안전관리과(행정국소속)
 - 통 폐 합 : 민원봉사과 + 여권과 ⇒ 민원여권과(행정국소속)
 - 분리신설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 + 여성가족과(생활복지국소속)
 - 여유기구설치 : 자치지원반(행정국소속)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지원
- 부서신설 및 통폐합,분리에 따른 소관업무조정
 - 제5조 행정국의“구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에 관한사항,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관한사항, 구정의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사항”을 제6조 기획재정국으로 하고,
 - 제5조 행정국의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지도에 관한 사항”을 제7조 생활복지국으로 하고,
 - 제9조 건설교통국의“종합방재계획수립, 재난예방 및 복구대책, 재난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조 행정국으로 한다.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여유기구제 도입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2004.12.18)

- ※ 재난전담기구 설치 및 여유기구 승인(1담당관 22과 → 1담당관 23과)
- 구청장 방침 제138호(2005.2.7)
- ※ 혁신 및 경영마인드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 및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
- ※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여유기구인 자치지원반 설치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김찬재)

- 가.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전반에 걸친 혁신 및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나. 다만, 2004. 12. 18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하면 재난안전관리과는 구청장 직속인 독립기구인 종합상황실에 설치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개정안 제5조 제1항중 “자치행정과”를 “자치지원반”으로 명칭 변경함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른 규정이나, 명칭의 사용이 법령에 정하여진 사항이 아니고, 불필요하게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혼란과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으며, 행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현 명칭인 “자치행정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修正案 要旨

- 가. 수정요지
- 안 제5조제1항 자치지원반을 자치행정과로, 안 제7조제1항 여성가족과를 가정복지과로 수정
-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5조제1항의 “행정국에 총무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재난안전관리과 및 여유기구인 자치지원반을 둔다”를 “행정국에 총무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재난안전관리과 및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를 둔다”로,
 - 안 제7조제1항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및 청소과를 둔다”를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및 청소과를 둔다”로 수정함

5. 審査結果 : 修正案 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1호
----------	------------

제출년월일 : 2005.3.7.

제 출 자 : 김영진 의원

1. 수정이유

명칭의 사용이 법령에 정하여진 사항이 아니고 불필요하게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혼란과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으며,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수정

2. 주요내용

- 안 제5조제1항의 “행정국에 총무과,민원여권과,문화체육과,재난안전관리과 및 여유기구인 자치지원반을 둔다”를
“행정국에 총무과,민원여권과,문화체육과,재난안전관리과 및 여유기구인 자치 행정과를 둔다”로,
- 안 제7조제1항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지역경제과,환경과 및 청소과를 둔다”를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지역경제과,환경과 및 청소과를 둔다”로 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의 “행정국에 총무과,민원여권과,문화체육과,재난안전관리과 및 여유기구인 자치지원반을 둔다”를
“행정국에 총무과,민원여권과,문화체육과,재난안전관리과 및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를 둔다”로

제7조제1항의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및 청소과를 둔다”를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및 청소과를 둔다”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생략) 제5조(행정국)①행정국에 총무과,기획예산과,민원봉 사과,문화체육과,여권과 및 자치행정과를 둔다 제7조(생활복지국)①생활 복지국에 사회복지과,지 역경제과,환경과 및 청소 과를 둔다 ②(생략)	제3조(생략) 제5조(행정국)①행정국에 총무과,민원여권과,문화체 육과,재난안전관리과 및 여유기구인 자치지원반을 둔다 제7조(생활복지국)①생활 복지국에 사회복지과,여 성가족과,지역경제과,환경 과 및 청소과를 둔다 ②(생략)	제3조(개정안과 같음) 제5조(행정국)①행정국에 총무과,민원여권과,문화체 육과,재난안전관리과 및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를 둔다 제7조(생활복지국)①생활 복지국에 사회복지과,간 정복지과,지역경제과,환경 과 및 청소과를 둔다 ②(생략)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1
----------	-----

제출년월일 : 2005.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지침(2004.12.18)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한시기구 여유
기구화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 및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탄력있는
조직운동을 위하여 조직의 통폐합과 명칭을 조정하여 구민의 정서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구분청 명칭변경 : 재무국 → 기획재정국

나. 부서신설 및 통폐합, 소관부서 조정

- 신 설 : 재난안전관리과(행정국소속)
- 통 폐 합 : 민원봉사과+여권과⇒민원여권과(행정국소속)
- 분리신설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생활복지국소속)
- 여유기구설치 : 자치지원반(행정국소속)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전환

다. 부서신설 및 통폐합·분리에 따른 소관업무조정

- 제5조 행정국의 “구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에 관한사항,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관한사항, 구정의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을 제6조 기획재정국으로 하고,
- 제5조 행정국의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지도에 관한 사항”을 제7조 생활복지국으로 하고,
- 제9조 건설교통국의 “종합방재계획수립, 재난예방 및 복구대책,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조 행정국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여유기구제 도입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2004.12.18)
 - ※ 재난전담기구 설치 및 여유기구 승인(1담당관 22과→1담당관 23과)
- 구청장방침 제138호(2005.2.7)
 - ※ 혁신 및 경영마인드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 및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
 - ※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여유기구인 자치지원반 설치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라. 기타참고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 2005. 2. 8. ~ 2. 13(6일간)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재무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한다.

제5조제1항중 “행정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와, 문화체육과, 여권과 및 자치행정과를 둔다.”을 “행정국에 총무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재난안전관리과 및 여유기구인 자치지원반을 둔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5호, 제6호, 제8호, 제2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종합방재계획수립, 재난예방 및 복구대책,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중 “재무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재무국에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를 둔다.”를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를 둔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7호,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에 관한사항

8.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관한사항

9. 구정의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중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및 청소과를 둔다.”를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및 청소과를 둔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14호,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지도에 관한 사항

15.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제9조 (건설교통국)제2항제19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재무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보고, “재무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보며 “민원봉사와” 또는 “여권과”를 “민원여권과”로 보고 “민원봉사와장” 또는 “여권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본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국의 설치)-----재무국-----</p> <p>제5조 (행정국) ①행정국에 총무과,기획 예산과,민원봉사과,문화체육과,여권과 및 자치행정과를 둔다.</p> <p>②(생략)</p> <p>1~3(생략)</p> <p>4.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등 시민단체 지원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p> <p>5.구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에 관한사항</p> <p>6.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관한사항</p> <p>7.(생략)</p> <p>8.구정의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p> <p>9~20(생략)</p> <p>21.청소년복지 및 청소년지도에 관한 사항</p> <p>22.(신설)</p> <p>제6조 (재무국) ① 재무국에 재무과-----</p> <p>②재무국장은-----</p> <p>1~6(생략)</p> <p>7.(신설)</p> <p>8.(신설)</p> <p>9.(신설)</p>	<p>제3조 (국의 설치)-----기획재정국-----</p> <p>제5조 (행정국) ①행정국에 총무과,민원여 권과,문화체육과,재난안전관리과 및 여유기 구인 자치지원반을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1~3(현행과 같음)</p> <p>4.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등 시민단체 지원</p> <p>5.(삭제)</p> <p>6.(삭제)</p> <p>7.(현행과 같음)</p> <p>8.(삭제)</p> <p>9~20(현행과 같음)</p> <p>21.(삭제)</p> <p>22.종합방재계획수립, 재난예방 및 복구 대책,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p> <p>제6조 (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 예산과,재무과-----</p> <p>②기획재정국장은-----</p> <p>1~6(현행과 같음)</p> <p>7.구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에 관한사항</p> <p>8.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관한사항</p> <p>9.구정의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p>

현행	개정안
<p>제7조 (생활복지국) ①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지역경제과,환경과 및 청소과를 둔다.</p> <p>②(생략)</p> <p>1~13(생략)</p> <p>14. (신설)</p> <p>15. (신설)</p> <p>제9조 (건설교통국) ① (생략)</p> <p>②(생략)</p> <p>1~18(생략)</p> <p>19. <u>종합방재계획수립, 재난예방 및 복구 대책,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u></p> <p>20.(생략)</p>	<p>제7조 (생활복지국) ①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u>여성가족과</u>,지역경제과,환경과 및 청소과를 둔다.</p> <p>②(현행과 같음)</p> <p>1~13(현행과 같음)</p> <p>14. <u>청소년복지 및 청소년지도에 관한 사항</u></p> <p>15. <u>자원봉사에 관한 사항</u></p> <p>제9조 (건설교통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1~18(현행과 같음)</p> <p>19.(삭제)</p> <p>20.(현행과 같음)</p>